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31
----------	------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05월 26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5년 05월 29일
- 상정일자 : 제331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6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시민건강국장)

1. 제안이유

- 서울시 권역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 및 설치 주체 전환에 따라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센터 설치 규정에서 권역별 설치 삭제(안 제4조)
- 심리지원센터별 주요 업무 및 기능 추가(안 제4조)
- 조직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권역별 규정 삭제(안 제6조)

○ 센터 설치 관련 사업비 지원근거 신설(안 제7조)

○ 그 밖의 문구 및 약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개선의견: 심리서비스 제공인력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조항 신설

- 반영사항: 반영완료(안 제5조제7호 신설)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25. 02. 13.~ 2025. 03. 05.

마.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개요

1. 서울시 ‘권역’ 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종료 배경

- 서울시는 만 19세 이상 시민에게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근거로 2018년부터 ‘권역’ 심리지원센터(4개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옴.

<서울 권역 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설립근거** :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 **조직 및 인력** : 4개센터, 총 20명

연번	시설명	수탁기관	시설 주소 및 규모	인력현황
1	서울심리지원 제1권역센터(동남)	아이코리아	송파구 송파로6길 17, 202호(379.8㎡)	각 센터별 5명 · 센터장 1(비상근) · 팀장 1 · 팀원 3 (상담, 교육1 회계1)
2	서울심리지원 제2권역센터(동북)	덕성여자대학교	도봉구 삼봉로 144길 33, 덕성여자대학교 205.7㎡	
3	서울심리지원 제3권역센터(서남)	항공기소음	양천구 오목로 79, 3층(204.7㎡)	
4	서울심리지원 제4권역센터(중부)	행복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동대문구 고산자로 36길 3, 301호(200㎡)	

○ **운영방법** : 민간위탁(사무형)

○ **위탁기간** : (1,2,3권역) '18. 4. 1.~'24. 12. 31. (4권역) '21. 10. 1.~'24. 12. 31.

○ '24년 사업예산 : 총 1,369,290천원(시비100%)

- 그런데 위 ‘권역’ 심리지원센터(4개소)는 그간 시의회와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등에서 ① 운영법인의 전문성 부족, ②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③ 상담체계 미흡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다음 페이지 참조).

<서울 권역 심리지원센터 문제점>

< 권역 심리지원센터 한계(문제점) >

- ◆ (운영법인의 전문성 부족) 전문성·연계성 등이 부족한 소규모 법인에서 각각 운영
- ◆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3개의 권역[동북(2), 서남(1), 동남(1)]에만 위치하여 접근성 미흡
- ◆ (상담체계 미흡) 비상근센터장·행정직원 제외, 상담인력 3명으로 상담 대기시간 대기(2~3개월)

- 이에 서울시는 작년 1월부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통해 <서울 심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진단과 향후 사업 수행 방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¹⁾하고 있으며,

또, 기존 심리지원사업의 ‘효과적인 관리 및 평가 체계 수립’ 등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관’을 설립·운영하고자 이 조례 제7조를 근거로²⁾ 작년 4월 우리 의회 동의³⁾를 받아 ‘광역’ 심리지원센터 (수탁기관: (사)한국심리학회)를 10월 개소하였음.
- 그런데 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의 중간보고(24. 8. 5.)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심리지원 관련 공급은 공공인프라의 양적 부족으로 민간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구조인데, 민간 심리지원 분야는 민간 자격 난립과⁴⁾ 과도한 상업화, 성범죄 등의 부작용⁵⁾이 발생하고

1) 자료 : 정신건강과-468(2024.1.8.), 2024년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공공보건정책실) 연구과제 변경 요청

(변경요청 연구과제)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진단과 향후 사업 수행 방향

2)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 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

3) 서울특별시 광역심리센터 민간위탁 신규위탁 동의안,

(심사경과) 제안일 2024.04.18. → 심사일 2024.04.29. → 의결일 2024.05.03.(가결)

4) 자료 : 강창욱 기자 등(2022.5.23.), “무조건 합격이세요” 영터리 심리상담사, 기자도 봤다[이슈&탐사],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03881>,

5) 자료 : 오세진 기자(2019.5.30.), [단독]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유명 상담사, 그루밍 성폭력 가해

있다고 함.

- 또한, 최근 마음건강, 정신건강, 심리, 상담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국민 대상 ‘심리지원서비스 요구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이 원하는 이용기관은 ‘정부(공공) 운영 기관’(60.7%), ‘의료기관’(47.6%), ‘민간기관’(32.1%)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서울시민의 정신건강관리 접근성 향상” 방안으로, ‘자치구 심리지원상담센터 확대(안)’을 제시함.

- 서울시는 이러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중간보고(24. 8. 5.) 자료에 따라, 작년 10월 ‘서울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종료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권역’ 심리지원센터(4개) 위탁기관에 ‘위·수탁기간 만료(2024. 12. 31.)’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가 종료됨을 통보한 후, 민간위탁 운영을 종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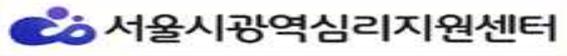
2. ‘자치구’ 심리지원센터 확대 추진 계획

- 이후, 지난 2025년 2월 서울시가 수립한 「2025년 자치구 마음상담소 설치 계획」에 따르면, 26년까지 전 자치구에 마음상담소를 확대(‘25년 3월 말 기준 9개구 11개소) 설치⁶⁾하여 심리상담 진입장벽 해소 및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임(다음 페이지 참조).

자였습니다”, 서울신문.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19/05/30/20190530500175>

6) 설치주체: 지방자치단체장(운영: 자치구 직영(권장) 또는 위탁)
추진방법: 자치구 공모사업
소요예산: 1,3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2025년 자치구 마음상담소 설치 계획>

II 세부 추진계획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부터 운영관리 전반에 걸친 종합컨설팅·교육 지원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 ✓ 1자치구 1마음상담소 운영으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접근성 제고 ✓ 지역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특화사업 및 공통사업 추진 							
□ 사업 체계도							
목표	마음상담소 전 자치구로 확대 ('24년) 9개구 11개소 - ('26년) 25개구 27개소						
주요 과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공간(시설)</th> <th>상담인력</th> <th>서비스</th> </tr> </thead> <tbody> <tr> <td> - 상담실 및 대기공간 배치와 동선 최적화 -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 및 인테리어 구성 </td> <td> - 전문상담사 채용요건 및 역할 설정 - 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설계 </td> <td> - 지역특성에 맞는 심리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 시민 접근성 향상위한 예약 및 상담절차 간소화 추진 </td> </tr> </tbody> </table>	공간(시설)	상담인력	서비스	- 상담실 및 대기공간 배치와 동선 최적화 -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 및 인테리어 구성	- 전문상담사 채용요건 및 역할 설정 - 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설계	- 지역특성에 맞는 심리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 시민 접근성 향상위한 예약 및 상담절차 간소화 추진
공간(시설)	상담인력	서비스					
- 상담실 및 대기공간 배치와 동선 최적화 -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디자인 및 인테리어 구성	- 전문상담사 채용요건 및 역할 설정 - 상담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설계	- 지역특성에 맞는 심리 상담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제공 - 시민 접근성 향상위한 예약 및 상담절차 간소화 추진					
자문	마음상담소 설치·운영 자문단						
연계 기관	상담전화 (1577-0199) (120) + Wee센터 Wee클래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 민·간 상담기관						
추진 기반	 						

3. 202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처리결과: 미처리)

-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행조례에서 심리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향후 설치 주체 변경(민간위탁 → 자치구) 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구 심리지원센터(가칭: 마음상담소)의 설치비 지원(1개 센터당 최대 2억 지원) 근거를 마련⁷⁾하고자 지난 2025년 3월 31일 「서울

7) 지난 24년 10월 10일 개최된 「‘24년 제14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했을 때는 조례상 서울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권역별로 설치,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부서에서는 민간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별로 1개소당 2억의 자본금을 투자하면서 설치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 “조례상의 자치구 설치·지원에 관한

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7)을 시장 제출한 바 있음.

-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위원회는 위 시장제출 조례안(의안번호 2647)에 대한 사전심사(2025. 4. 28.) 과정에서,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설치·운영될 심리지원센터는 둘 이상(광역 센터, 자치구 센터)인데, 기존 ‘광역 심리지원센터’와 향후 설치될 ‘자치구별 심리지원센터’의 역할 및 업무가 이 조례상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고, 해당 안건을 미처리(상정 보류)한 바 있음.

2 주요 내용별 검토

- 이번 시장 제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여, 현행조례 제4조에 센터별로 항을 두어 각 센터에 대한 업무 및 기능을 별도로 규정한 후, 해당 센터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을 원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u>	제1조(목적) ----- <u>공공</u> ----- ----- ----- ----- <u>위한</u>

내용이 부재하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하면 조례 개정을 조건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는 의견(심의 결과: 조건부)이 있어, 조례를 정비해야만 하는 상황임.

여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
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
해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
른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
는 시민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
층,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
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
구원 등은 다른 시민에 우선하
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
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리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설

----- 규정
하여 시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
----- 서울특별시-----
-----.

②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
라 한다)-----
----- 차상위계층

-----.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
----- 위
하여 광역 센터-----

-----.

② 광역 센터의 주요 업무 및

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평가
에 관한 사항
2.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호
에 관한 사항
4.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구별 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자치구별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과 교육을 위한 인
식개선·홍보 및 유관기관과
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
항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 추구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구성 및 동료상담가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센터 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5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되,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3.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제5조(센터 조직 등) <삭 제>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1. 2. (생략)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생략)

② 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심리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각 심

광역 센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 시장-----.

1. 2. (현행과 같음)

제6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
-- 광역 센터-----
----- 광역 센터-----

-----.

1. (현행과 같음)

2. -----

-- 설치되어-----

3. (현행과 같음)

② ----- 광역 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범위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광역 센터-----

----- 위해 광역 센터--

리지원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9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구 또는 수탁 기관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따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심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제11조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조(사무의 위임) ① -----
----- 자치구별 센터 -----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구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 다만, 이 조례개정 이후, 서울시의 추진계획대로 26년까지 전 자치구에 마음상담소('25년 3월 말 기준 9개구 11개소 설치)가 확대 설치8)되고, 올해 관련 설치비 예산(13억 원, 1개 센터당 최대 2억 원 지원)이 불용 처리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은 필요하겠음.
- 지난 25년 5월 8일 '자치구 마음상담소 확충계획 및 공모안내' 관련,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간 회의를 개최한 결과, 자치구들은 “자치구별 신규 설치를 위한 공간 및 예산확보 그리고 인력문제, 특히 운영비 및 인건비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현재까지 설치 희망 의사를 밝힌 자치구는 3곳(용산구, 강북구, 마포구)에 그침.

〈자치구 마음상담소 현황('25.3월말 기준)〉

연번	구분	시작연도	시설명	운영주체
1	강동구	2007년	마음 두드림 상담소	강동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	구로구	2020년	더 가까이 심리상담실	구로구 보건소
3	금천구	2018년	심리상담 마음'쉽'	금천구 보건소
4	동작구	2016년	마음건강센터	동작구 보건소
5	성북구	2022년	성북구심리지원센터	성북구 보건소
6	영등포구	2013년	힐링캠프 상담실	영등포구 보건소
7	은평구	2011년	한마음심리상담실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2014년	다독임심리지원센터 *비고; '청소년마음건강센터 마음온' 운영 중	은평구 응암보건지소
8	중구	2020년	마음건강 열린상담실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9	종랑구	2018년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1호)	종랑구 보건소
		2024년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2호)	
10	종로구			
11	용산구	설치 희망		
12	성동구			
13	광진구			
14	동대문구			
15	강북구	설치 희망		

8) 설치주체: 지방자치단체장(운영: 자치구 직영(권장) 또는 위탁)
추진방법: 자치구 공모사업
소요예산: 1,3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

16	도봉구			
17	노원구			
18	서대문구			
19	마포구	설치 희망		
20	양천구			
21	강서구			
22	관악구			
23	서초구			
24	강남구			
25	송파구			

3 종합의견

- 서울시는 ① 기존 ‘권역’ 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현행조례에서 심리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② 향후 설치 주체 변경(민간위탁 → 자치구) 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자치구 심리지원센터(가칭: 마음상담소)의 설치비 지원(1개 센터당 최대 2억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25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2647)」을 시장 제출한 바 있음.
- 하지만, 당시 시장제출 조례안(의안번호 2647)에는, 기존 ‘광역 심리지원센터’와 향후 설치될 ‘자치구별 심리지원센터’의 역할 및 업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보건복지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미처리(상정 보류)한 바 있음.
- 이번 시장 제출 조례안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적한 문제를 개선하여, 현행조례 제4조에 센터별로 항을 두어 각 센터에 대한 업무 및 기능을 별도로 규정한 후, 해당 센터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이 조례개정 이후, 서울시의 추진계획대로 26년까지 전 자치구에 마음상담소('25년 3월 말 기준 9개구 11개소 설치)가 확대 설치되고, 올해 관련 설치비 예산(13억 원, 1개 센터당 최대 2억 원 지원)이 불용 처리될 우려가 없는지에 대한 사전 점검은 필요하겠음.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생략」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생략」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31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시 권역심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 및 설치 주체 변경에 따라 조례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센터 설치 규정에서 권역별 설치 삭제(안 제4조)
- 나. 심리지원센터별 주요 업무 및 기능 추가(안 제4조)
- 다. 조직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권역별 규정 삭제(안 제6조)
- 라. 센터 설치 관련 사업비 지원근거 신설(안 제7조)
- 마. 그 밖의 문구 및 약칭 정비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반영)
 - 개선의견: 심리서비스 제공인력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조항 신설
 - 반영사항: 반영완료(안 제4조제2항제3호)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2. 13. ~ 3. 5.)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미경(☎2133-7842)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을 원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을 “공공”으로, “위하여”를 “위한”으로, “규정함”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심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시”를 “서울특별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을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차상위 계층”을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센터의 설치)”를 “(센터의 설치·운영 등)”으로 하고, 같

은 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위하여 광역 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광역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평가에 관한 사항
2.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구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자치구별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과 교육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을 “광역 센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로,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심리지원센터”를 각각 “광역 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설치 되어”를 “설치되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심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 하는”을 “광역 센터를 민간위탁하는”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7조 및 제9조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심리지원센터”를 “자치구별 센터”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구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리지원센터”를 “시장은 광역 센터”로,
“구하기 위하여 각 심리지원센터”를 “위해 광역 센터”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을 원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차원의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u>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u>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u>심리지원센터</u>“(이하 “<u>센터</u>”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u>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u>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u>서울시</u>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한다.</p> <p>② <u>시장</u>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u>차상위 계층</u>,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속한 개인 및 가구원 등은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u>공공</u> ----- ----- ----- ----- <u>위한</u> ----- <u>규정</u> <u>하여 시민의 삶의 만족 및 행복 증진에 이바지함</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u>심리지원센터</u>“(이하 “<u>센터</u>”라 한다)란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집단활동 등을 통해 <u>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돕는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u>을 말한다.</p> <p>제3조(적용대상) ① ----- ----- <u>서울특별시</u>----- -----.</p> <p>② <u>서울특별시</u>장(이하 “<u>시장</u>”이라 한다)----- ----- <u>차상위계층</u> ----- ----- -----.</p>

제4조(센터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심리지원센터는 권역별로 설치하되, 권역·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 위 하여 광역 센터-----

② 광역 센터의 주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지원 및 모니터링·평가에 관한 사항
2.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인력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심리지원 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역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구별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자치구별 센터의 주요 업무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건강한 성장과 행복 추구 실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 조모임구성 및 동료상담가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 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 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리상담과 교육을 위한 인식개선·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리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센터 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5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두
되,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
치인원·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
항은 권역별 센터의 특성에 따
라 시장이 정한다.

1.·2. (생략)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
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
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
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
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생략)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
가 설치 되어 있는 학교

제5조(센터 조직 등) <삭 제>

광역 센터에는 제4조제2항에 따
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 시장-----.

1.·2. (현행과 같음)

제6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
-- 광역 센터-----
----- 광역 센터----

-----.

1. (현행과 같음)

2. -----

-- 설치되어 -----

3. (생략)

② 시장은 심리지원센터를 민간 위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생략)

제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심리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각 심리지원센터에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9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자치구 또는 수탁기관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따른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심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신설>

3. (현행과 같음)

② ----- 광역 센터를 민간위탁 하는----- 범위-----
-----.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광역 센터-----

----- 위해 광역 센터-----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조(사무의 위임) ① -----
----- 자치구별 센터-----

-----.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

당 자치구에 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정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생략)

제9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자치구 심리지원센터(마음상담소) 설치비 지원 등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 3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지출	자치단체자본보조	1,300,000	520,000	260,000	-	-	2,080,000
	소계(a)	1,300,000	520,000	260,000	-	-	2,080,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1,300,000	520,000	260,000	-	-	2,08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	-	-	-	-	-
시비	지방세수입	1,300,000	520,000	260,000	-	-	2,080,000
	세외수입	-	-	-	-	-	0
	지방채 등	-	-	-	-	-	0
민간		-	-	-	-	-	0
기타		-	-	-	-	-	0
합계		1,300,000	520,000	260,000	-	-	2,080,000

5. 덧붙이는 의견

- 설치목표 : '25년 10개소, '26년 4개소, '27년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27년까지 전 자치구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임

6. 작성자 : 시민건강국 정신건강과 김미경(2133-784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1차년도 (2025)	2차년도 (2026)	3차년도 (2027)
지출	○ 자치단체자본보조	1,300,000	520,000	260,000
	설치비	1,300,000	520,000	260,000
	소계	1,300,000	520,000	260,000